

입력자	확인자
우순도	강호간

## 대학원 외국인학생 특례입학 시행세칙 개정안

[시행 2021.10.1.]

**제1조(목적)** 이 시행세칙은 「대학원 학칙」 제4조제2항 및 제11조의2 외국인학생의 특례입학에 관한 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7.9.1.>

**제2조(외국인의 정의)**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<개정 2010.11.8., 2017.9.1.>

1.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학생
2.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·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

**제3조(지원자격)** 학위과정별 외국인학생의 특례입학 지원자격은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0.11.8., 2017.9.1., 2021.10.1.>

1. 석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은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자로서 한국어 또는 영어 사용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
2. 박사학위과정은 국내외 정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자로서 한국어 또는 영어 사용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

**제4조(모집학과 및 인원)** 모집학과는 「대학원 학칙」 제4조의 학과로 하며, 별도의 입학전형에 의하여 정원으로 입학할 수 있다. <개정 2017.9.1.>

**제5조(모집시기)** 학생의 모집 시기는 각 대학원의 입학전형 일정에 준한다. 다만, 연구생 지원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각 학과 교수회의의 승인 후,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 중에도 입학할 수 있다. <개정 2017.9.1.>

**제6조(제출서류)** 외국인 학생의 입학 관련 제출서류는 각호와 같다. <개정 2010.11.8., 2021.10.1.>

1. 입학지원서(소정 양식) 1부
2. 학사(석사)학위취득(예정)증명서 1부
3. 학사(석사)학위과정 성적증명서 1부
4. 해외거주 사실 확인서 1부(재외국민에 한함)
5. 본인 및 부, 모의 외국인 증명서 각 1부
6. 본인 호적등본 1부(재외국민에 한함)
7. 기타 사증발급 및 전형업무에 필요한 서류

**제7조(전형방법)** ①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선발하고, 경우에 따라 구술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.

② 예·체능계는 경우에 따라 실기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0.11.8.]

**제8조(연구생)** 외국인 학생은 「대학원 학칙」 제24조의 연구생으로 청강할 수 있으며, 그 입학 절차는 이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 <개정 2017.9.1.>

**제9조(장학혜택)** 학업 성적이 특별히 우수하고, 학과에서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금 일부를 면제해 줄 수 있다.

**제10조(준용)**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대학원 학칙」 및 제반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17.9.1.>

**제11조(기타)** 국제학술 교류협력 등에 의하여 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 중 한국어 사용 능력이 미흡한 자는 이 대학교 부설 언어교육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

### 부칙

**제1조**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칙

**제1조**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10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

**제1조**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

**제1조**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